#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

제정 2019. 6. 26.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임원에 대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①이 규정은 공사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- ②이 규정에서 임원은 「정관」제21조에 따른 사장, 감사, 이사를 말한다.
- ③임원에 대한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과 「정관」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근무시간 등) 임원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「취업규칙」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일수 또는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제4조(휴일)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매주 일요일
- 2. 근로자의 날
- 3. 기타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한 날. 다만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.

제5조(근무지) 임원의 근무지는 「정관」제3조에 따른 소재지로 한다. 다만, 소관 사무의 핵심기능이 다른 지역에 설치 운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 우 해당 지역을 근무지로 볼 수 있다.

#### 제2장 출장

제6조(출장의 신고) ①이사는 사장에게 출장목적, 기간 등을 사전 신고하여야한다. 다만,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

하다.

- ②사장 및 감사의 경우, 자율적으로 출장 실시 가능하며, 이 경우에도 근무상황 부에 출장목적, 기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.
- 제7조(근무상황부 관리) 사장은 이사의 근태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근태상황을 처리 관리할 수 있다.
- 제8조(출장여비) 임원이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장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「여비세칙」에 따른다.
- 제9조(출장종료) 임원의 출장 시, 지정된 기일내에 임무를 완수하여 귀임하여야 하고, 기일 내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.

#### 제3장 휴가 등

- 제10조(휴가의 종류) ①임원의 휴가는 연차휴가, 청원휴가, 인병휴가,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.
  - ②임원의 연차휴가 일수는 연 11일로 하되, 임원 임명 전 경력을 감안하여 경력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며, 가산일수를 포함한 최대 연차휴가 일수는 21일로 한다.
  -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연도 중 임명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한하여 연 차휴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부여한다. 단, 월 근무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1 개월 근무한 것으로 본다.
- 제11조(휴가의 승인) ①이사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, 사장 및 감사는 주어진 휴가일수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.
  - ②이사는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, 다만,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 사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  - ③사장 및 감사는 휴가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2조(휴가 등의 운영)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휴가 등의 운영에 관하여 「휴가세칙」을 준용할 수 있다.

## 제4장 외부강의등

제13조(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) 임원은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, 「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「내부통제기준」, 「윤리행동강령」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. 6. 26.부터 시행한다.